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농지투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농지 취득 및 사후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지법」 개정안이 공포('21.8.17.) 후 시행('22.5.18., '22.8.18.) 예정임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고,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 가.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류를 추가함(안 제7조제1항 개정)
- 나. 농지 취득 시 제출해야하는 증명서류를 구체화함(안 제7조제2항 신설)
- 다. 농지 취득 시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야하는 대상을 규정함(안 제7조제3항 신설)
- 라. 농지취득자격증명 접수 시 행정정보공동이용 범위를 확대하고, 신청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서류 제출의무를 부여함(안 제7조제4항 개정)
- 마. 농지 취득자격 확인을 위한 필수 고려사항을 보완함(안 제7조제5항 개정)
- 바. 주소불명의 사유로 농지 처분통지가 불가능할 경우 게시판 외에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알리도록 공고 방식을 확대함(안 제8조제2항 개정)
- 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매년 실시하는 실태조사의 범위를 구체화함(안 제22조 신설)
- 아. 농지위원회 설치 최소면적 기준과 기능을 명확히 함(안 제54조, 제54조의2 신설)

- 자. 농지대장 변경 신청 절차를 구체화함(안 제58조의2 신설)
- 차. 자경증명 발급 민원처리기간을 연장함(안 제59조 개정)
- 카. 농지이용실태 의무조사 대상 명확히하고 공개방법을 규정함(안 제63조 신설)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농림축산식품부령 제 호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류”란”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류”란”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주말·체험영농계획서(법 제6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5. 별지 제4호의3서식의 농지원상복구계획서(영 제7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법 제8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신청인이 농업인인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으로부터 발급받은 농업인확인서

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5항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부터 발급받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증명서

2. 신청인이 농업법인인 경우 :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정관

나. 최근 5개 사업연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제11항에 따른 표준손익계산서

다. 임원 명부(신청인이 농업회사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라.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신청인이 농업회사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3. 신청인이 농업인이 아닌 개인인 경우 :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직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신청인이 1필지의 농지를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여러 사람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서 및 도면자료

5.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 :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라 발급된 외국인등록증

6. 신청인이 외국국적동포인 경우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발급된 국내거소신고증

③ 법 제8조제3항에서 “농지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토지거래허가 구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2.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법인

3. 취득대상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연결한 시·군·구 내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관할 시·군·구 내의 농지를 최초로 취득하려는 자

4. 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의 공유로 취득하려는 자

5.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6. 그 밖에 신청인의 농업경영능력 등을 면밀히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자

제7조제4항(중전의 제2항) 중 “해당한다)를”을 “해당한다),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신청인이 주민등록표등본, 사업자등록증,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제5항(중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농업기계·장비”를 “농업기계·장비·시설”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한정한다)”를 “한정한다) 및 임차 농지현황”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다년생식물의 종류”를 “하는 다년생식물의 종류, 영농 착수시기, 수확시기, 작업일정 등이 포함된 영농 계획”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신청자”를 “신청인”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신청인의 연령·직업·영농경력·영농거리 등 영농여건(세대원의 노동력을 활용하고 있거나 활용하려는 경우 세대원도 포함한다)

8. 최근 3년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이력(해당 농지를 소유한 경우 그 농지의 소유기간을 포함한다)

9. 농지 취득자금 조달계획

10. 신청인이 법 제10조제1항, 법 제11조제1항, 법 제42조제1항 및 법 제63조제1항을 위반하여 받은 행정처분의 내용 및 이행여부

제8조제2항 중 “게시판”을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다.

제4장제1절에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실태조사의 범위) 법 제31조의3제1항에서 “그 밖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34조·제35조·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협의 또는 농지전용신고 현황
2. 농지 실거래가격 및 거래량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4장제3절의 제목 “농지원부”를 “농지위원회”로 한다.

제4장제3절에 제54조 및 제54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농지위원회 설치 최소면적 기준) 법 제44조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650헥타르를 말한다.

제54조의2(농지위원회의 기능) 법 제46조에서 “그 밖에 농지 관리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농지 정책에 대한 교육 및 홍보
2.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55조 앞에 “제4절 농지대장”을 삽입한다.

제55조의 제목 “(농지원부의 작성·비치)”를 “(농지대장의 작성·비치)”

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농지원부는”을 “농지대장은”으로 한다.

제56조의 제목 “(농지원부 등의 관리)”를 “(농지대장 등의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지원부(법 제49조제4항)”을 “농지대장(법 제49조제5항)”으로, “농지원부 파일”을 “농지대장 파일”로, “농지원부를”을 “농지대장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지원부의”를 “농지대장의”로, “농지원부기재사항”을 “농지대장기재사항”으로 한다.

제56조제4항 중 “농지원부를”을 “농지대장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농지원부가”를 “농지대장이”로, “농지원부를,”을 “농지대장을,”로, “농지원부를 이송한”을 “농지대장을 이송한”으로, “농지원부의”를 “농지대장의”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농지원부”를 각각 “농지대장”으로 한다.

제57조의 제목 “(농지원부파일의 정리·보관 등)”을 “(농지대장파일의 정리·보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지원부 파일을”을 “농지대장 파일을”로, “농지원부 파일의”를 “농지대장 파일의”로, “농지원부 파일은”을 “농지대장 파일은”으로 한다.

제5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농지대장 파일의 입력·출력·편집·검색 그 밖에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른 농지대장 파일의 처리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제58조의 제목 “(농지원부의 열람 또는 등본교부신청)”을 “(농지대장의 열람 또는 등본교부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지원부를”을

“농지대장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지원부등본을”을 “농지대장등본을”로, “농지원부등본발급대장”을 “농지대장등본발급대장”으로 한다.

제5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의2(농지대장의 변경신청 등) ① 법 제49조의2에 따라 변경사항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8호의2서식에 따른 농지대장 정보 등록·변경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농지의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이 체결·변경 또는 해제되는 경우 :
농지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서

2.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토지의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다음 각 목에 따른 서류

가.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축사, 곤충사육사, 농막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등본 또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에 따른 신고필증

나. 가목 외 토지의 개량시설 : 시설의 설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진, 도면자료 등

② 제1항 각 호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자료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시·구·읍·면장은 제1항에 따라 변경신청을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법 제23조 등 이 법이나 관계 법령에 적합하면 변경사항

을 농지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59조제2항 중 “4일”을 “7일”로 한다.

제60조제9호 중 “농지원부등본발급대장”을 “농지대장등본발급대장”으로 한다.

제63조의 제목 “(증표)”를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54조제2항에서 “일정기간 내에 법 제8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 다만, 법 제23조제1항제6호 또는 같은 항 제7호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1.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법 제8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

2.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연접한 시·군·구 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취득한 농지

3. 1필지의 농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공유로 취득한 농지

4.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농지

6.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가 소유한 농지

7. 그 밖에 농지의 소유·거래·이용 또는 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농지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4조제3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다.

제63조제3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법 제54조제2항”을 “법 제54조제5항”으로 한다.

제64조 중 “영 제75조”를 “영 제76조”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의2서식 및 별지 제4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8조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8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59호서식의 제목 “농지원부등본발급대장”을 “농지대장 등본발급대장”으로 한다.

별지 제60호서식 중 “4일”을 “7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제74”를 “제75조”로 하며, 같은 서식 뒤쪽 제1호 중 “(민원24)”를 “(정부24)”로 하고, 같은 뒤쪽 제2호 중 “4일”을 “7일”로 한다.

별지 제64호서식 뒤쪽 중 “「농지법」 제54조제2항”을 “「농지법」 제54조제5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3항, 제54조, 제54조의2, 제55조, 제56조, 제57조, 제58조, 제58조의2, 제60조 및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이 규칙 시행에 따라 관계법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호의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한다.
2.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호의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한다.
3.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1호의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한다.
4.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제16조제2항제3호, 제16조제4항제3호, 제34조제2항, 제38조제2항의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한다.
5.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한다.
6.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1호자목1)의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한다.
7.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3조제4항제3호의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한다.
8.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3호서식 작성방법의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한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에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7일(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4일,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14일)				
농 지 취득자 (신청인)	①성 명 (명 칭)	②주민등록번호 (법인·외국인등록번호)				
	③주 소					
	④전화번호(또는 휴대전화번호)					
	⑤취득자의 구분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인이 아닌 개인 []법인 등					
취 득 농지의 표 시	⑥소 재 지					
	시·군	구·읍·면	리·동	⑦지번	⑧지목	⑨면적(m ²)
	⑩농 지 구 분					
	농업진흥지역		진흥지역 밖		영농여건 불리농지	
진흥구역		보호구역				
⑪ 취득 원인						
⑫ 취득 목적	[]농업경영 []주말·체험영농 []농지전용 []시험·연구·실습지용 등					

「농지법」 제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농지취득자(신청인)
시장·구청장·읍장·면장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뒤쪽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중 주민등록표 등본, 사업자등록증,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m²]

(뒤쪽)

신청인 제출서류	1. 별지 제2호서식의 농지취득신청서(법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농지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름
	2. 별지 제4호서식의 농업경영계획서(농지를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신청인 제출서류	3.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주말·체험영농계획서(법 제6조의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별지 제4호의3서식의 농지원상복구계획서(영 제7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농지임대차계약서 또는 농지사용대차계약서(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영 제7조제2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승인 등을 포함합니다)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농지를 전용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7.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토지(임야)대장 2. 주민등록표등본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5. 사업자등록증 6.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7.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기재시 유의사항

- ①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씁니다.
- ②란은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를 씁니다.
- ⑤란은 다음 구분에 따라 농지취득자가 해당되는 란에 √표를 합니다.
가. 신청당시 농업경영에 종사하고 있는 개인은 “농업인”
나. 농업회사법인·영농조합법인은 “농업법인”
다. 신청당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지만 앞으로 농업경영 또는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개인은 “농업인이 아닌 개인”
라. 그 밖의 법인은 “법인 등”

[취득농지의 표시]란은 취득대상 농지의 지번에 따라 매 필지별로 씁니다.

⑧란은 공부상의 지목에 따라 전·답·과수원 등으로 구분하여 씁니다.

⑩란은 매 필지별로 진흥구역·보호구역·진흥지역 밖으로 구분하여 해당란에 √표를 합니다.

⑪란은 매매·교환·경매·증여 등 취득원인의 구분에 따라 씁니다.

⑫란은 농업경영 / 주말·체험영농 / 농지전용 / 시험·연구·실습용 등 취득 후 이용목적의 구분에 따라 해당란에 √표를 합니다.

※ 농지는 「농지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며, 같은 법 제23조제1항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경우 농지 처분명령 / 이행강제금 부과 / 벌칙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기록하여야 합니다.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확인·조사	→	검토	→	증명발급 (또는 신청서의 반려)
--------	---	----	---	-------	---	----	---	----------------------

신청인

처리기관(시·구·읍·면)

농업경영계획서

(3쪽 중 제1쪽)

① 취득 대상 농지에 관한 사항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공유 지분의 비율	영농 거리 (km)	농지의 현재 상태
	시·군	구·읍·면	리·동						

② 소유농지 이용실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주재배 작물 (축종명)	자기의 농업경영 여부	취득대상 농지와의 거리(km)
	시·군	구·읍·면	리·동						

농업경영 노동력 및 농업 기계 · 장비 · 시설의 확보 방안	③취득자(취득 농업법인) 및 세대원(구성원)의 농업경영능력					
	성명	취득자와 관계	연령	직업	영농경력(년)	향후 영농여부
	④취득농지의 농업경영에 필요한 노동력 확보방안					
	자기노동력		일부위탁		전부위탁(임대)	
	⑤농업기계 · 장비 · 시설의 보유현황 및 계획					
	기계 · 장비 · 시설명		보유현황(계획)		시설면적(㎡)	

210mm×297mm[백상지 80g/㎡]

(3쪽 중 제2쪽)

⑥연고자에 관한 사항	연고자 성명		관계	
-------------	--------	--	----	--

⑦농지취득자금 조달계획	자기자금	차입금 등	합계
	원	원	원

⑧ 영농계획에 관한 사항	주재배작물 (축종명)				
	영농착수 시기	년	월	일	
	수확 예정 시기	년	월	일	
	작업일정	작업 종류	참여 인원(명)	소요자금	자금조달방안
	합	계		천원	
	부터	까지		천원	
	부터	까지		천원	
	부터	까지		천원	
	부터	까지		천원	
	부터	까지		천원	

⑨임차(예정)농지현황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주재배(예정) 작물의 종류 (기축종류명)	임차 (예정) 여부
시·도	시·군	읍·면	리·동					

「농지법」 제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본인이 취득하려는 농지에 대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구청장·읍장·면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첨부서류	1. 신청인이 농업인인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으로부터 발급받은 농업인확인서 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5항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부터 발급받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증명서
	2. 신청인이 농업법인인 경우 :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정관 나. 최근 5개 사업연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제11항에 따른 표준손익계산서 다. 임원 명부(신청인이 농업회사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라.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신청인이 농업회사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3. 신청인이 농업인이 아닌 개인인 경우 :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직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신청인이 1필지의 농지를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여러 사람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서 및 도면자료
	5.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 :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라 발급된 외국인등록증
	6. 신청인이 외국국적동포인 경우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발급된 국내거소신고증

작성방법

- ①란은 취득코자 하는 농지의 소재지·지번·지목, 면적(공유형태로 소유하는 경우 지분율)을 기록하고, 거주지로부터 농지소재지까지 일상적인 통행에 이용하는 도로에 따라 측정한 거리를 씁니다.
- ②란은 기존에 소유한 농지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을 기록하고 취득코자 하는 농지와의 통행거리를 기록합니다.
- ③란은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할 수 있는 세대원의 현황과 앞으로 3년간의 영농참여 여부를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 ④란은 취득하려는 농지의 농업경영에 필요한 노동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다음 구분에 따라 해당하는 난에 표시합니다.
- 가. 같은 세대의 세대원의 노동력만으로 영농하려는 경우에는 자기 노동력 란에 ○표
나. 자기노동력만으로 부족하여 농작업의 일부를 남에게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일부위탁(임대)란에 ○표
다. 자기노동력에 의하지 아니하고 농작업의 전부를 남에게 맡기거나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전부위탁(임대)란에 ○표
- ⑤란은 농업경영에 필요한 농업기계·장비·시설의 보유현황과 앞으로의 보유계획을 씁니다.
- 가. 기계·장비·시설명 란에는 보유하거나 보유 계획이 있는 농업기계·장비·시설의 명칭을 씁니다.
나. 보유현황 및 보유계획 란에는 수량을 씁니다.
다. 시설면적(㎡) 란에는 농지소재지에 시설(고정실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축사, 곤충사육사 등)이 있거나 설치 계획이 있는 경우 그 면적을 씁니다.
- ⑥란은 취득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하고 있는 연고자의 성명 및 관계를 씁니다.
- ⑦란은 농지취득자금 조달계획을 씁니다.
- 가. 자기자금: 금융기관 예금액, 토지보상금, 부동산매도액, 주식·채권 매각대금, 현금 등 기타의 합계
나. 차입금: 금융기관 대출액, 사채, 기타 등의 합계
- ⑧란은 영농계획에 관한 사항에 대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기록합니다.
- 가. 주재배작물(축종명)란은 경작하려는 농작물 또는 재배하고자 다년생식물의 종류 등 농업경영 대상을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나. 영농착수 시기란과 수확예정 시기란은 농지취득 후 경영착수일과 수확이 예정되는 시기를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다. 작업일정란은 3년간의 작업 일정을 6개월 단위로 작업내용과 농업경영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인력, 소요자금의 규모와 조달방안을 기록하고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 ⑨란은 임차 중(예정포함)인 농지에서의 영농상황(계획)을 기록합니다.
- ※ 위 양식을 충실히 기재하지 않으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주말·체험영농계획서

① 취득 대상 농지에 관한 사항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공유 지분의 비율	영농 거리 (km)	(앞쪽) 농지의 현재 상태
	시·군	구·읍·면	리·동						
	계								

② 소유농지 이용실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주재배 작물 (축종명)	자기의 주말· 체험영농 여부	취득대상 농지와 거리(km)
	시·군	구·읍·면	리·동						
	계								

주말·체험영농 노동력 및 농업 기계·장비·시설의 확보 방안	③취득자(취득 농업법인) 및 세대원(구성원)의 주말·체험영농능력					
	성명	취득자와 관계	연령	직업	영농경력(년)	향후 영농여부
	④취득농지의 주말·체험영농에 필요한 노동력 확보방안					
	자기노동력			전부위탁(임대)		
	⑤농업기계·장비·시설의 보유현황 및 계획					
	기계·장비·시설명		보유현황(계획)		시설면적(㎡)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⑥농지취득자금 조달계획	자기자금	차입금 등	합계
	원	원	원

⑦ 영농계획에 관한 사항	주재배작물 (축종명)			
	영농착수 시기	년	월	일
	수확 예정 시기	년	월	일

⑧임차(예정)농지현황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	주재배(예정) 작물의 종류 (가축종류명)	임 차 (예 정) 여부
시 · 도	시 · 군	읍 · 면	리 · 동					

「농지법」 제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본인이 취득하려는 농지에 대한 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구청장·읍장·면장 귀하

첨부서류	1. 신청인이 농업인이 아닌 개인인 경우 :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직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신청인이 1필지의 농지를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여러 사람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서 및 도면자료
	3.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 :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라 발급된 외국인등록증
	4. 신청인이 외국국적동포인 경우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발급된 국내거소신고증

작성방법
①란은 취득코자 하는 농지의 소재지·지번·지목, 면적(공유형태로 소유하는 경우 지분율)을 기록하고, 거주지로부터 농지소재지까지 일상적인 통행에 이용하는 도로에 따라 측정한 거리를 씁니다. ②란은 기존에 소유한 농지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을 기록하고 취득코자 하는 농지와와 통행거리를 기록합니다. ③란은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할 수 있는 세대원의 현황과 앞으로 3년간의 영농참여 여부를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④란은 취득하려는 농지의 주말·체험영농에 필요한 노동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다음 구분에 따라 해당하는 난에 표시합니다. 가. 같은 세대의 세대원의 노동력만으로 영농하려는 경우에는 자기 노동력 란에 ○표 나. 자기노동력에 의하지 아니하고 농작업의 전부를 남에게 맡기거나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전부위탁(임대)란에 ○표 ⑤란은 주말·체험영농에 필요한 농업기계·장비·시설의 보유현황과 앞으로의 보유계획을 씁니다. 가. 기계·장비·시설명 란에는 보유하거나 보유 계획이 있는 농업기계 장비·시설의 명칭을 씁니다. 나. 보유현황 및 보유계획 란에는 수량을 씁니다. 다. 시설면적(㎡) 란에는 농지소재지에 시설(고정실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축사, 곤충사육사 등)이 있거나 설치 계획이 있는 경우 그 면적을 씁니다. ⑥란은 농지취득자금 조달계획을 씁니다. 가. 자기자금: 금융기관 예금액, 토지보상금, 부동산매도액, 주식·채권 매각대금, 현금 등 기타의 합계 나. 차입금: 금융기관 대출액, 사채, 기타 등의 합계 ⑦란은 주말·체험영농 대상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농지취득 후 영농착수일과 수확이 예정되는 시기를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⑧란은 란은 임차 중(예정포함)인 농지에서의 주말·체험영농상황(계획)을 기록합니다. ※ 위 양식을 충실히 기재하지 않으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3서식] <신 설>

농지원상복구계획서

제출인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법인·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	

취득농지의 현재 상태	소 재 지				지번	지목	토지면적 (㎡)	훼손면적 (㎡)
	시·도	시·군	읍·면	리·동				
훼손내용 및 그 정도				훼손 원인		훼손된 시기		

원상복구 계획	구체적인 방법							
	작업일정							
	소요비용			자금조달계획			이행완료기한	

「농지법」 제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농지원상복구계획서를 작성·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구청장·읍장·면장 귀하

유의사항
1. 이 계획서에 따라 이행완료기한에 농지를 원상복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농지법」 제10조·제11조제1항 및 제63조에 따라 해당 농지의 처분의무부과, 처분명령 및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이 계획서에 따라 이행완료기한에 농지를 원상복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농지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원상회복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대집행 또는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 호

농지취득자격증명

농 지 취득자 (신청인)	성 명(명 칭)	주민등록번호(법인·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취득농지의 표 시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농지구분

취득목적	
------	--

귀하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에 대하여 「농지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구청장·읍장·

면장

직인

유의사항

- 농업법인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5에 따라 소유농지의 임대가 금지됩니다.
- 귀하께서 해당 농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농지법」 제6조에 따른 농지 소유 제한이나 제7조에 따른 농지 소유 상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따라 이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판명되면 「농지법」 제5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귀하께서 취득하여 소유한 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하여야 하며(「농지법」 제6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제외), 취득한 해당 농지를 취득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농지법」 제10조·제11조제1항 및 제63조에 따라 해당 농지의 **처분의 무부과**, 처분명령 및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귀하께서 취득하여 소유한 농지는 「농지법」 제23조제1항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120g/㎡]

농 지 대 장

장번호: 1/2

고 유 번 호	XXXXXXXXXX-X-XXXX-XXXX-XX(일련번호)										발급번호	XXXXXXXXXX-XXXXXX-XXXXXX				
소 재 지	지번	지적공부			농지구분	현황(실제)		소 유 사 항								
		지목	면적(㎡)	용도지역		지목	면적(㎡)	소유일련번호	등기원인	원인일자(등기신청접수일)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법인)번호	주소	소유면적(㎡)	이용현황	경작현황(확인일자)

※ 기재사항 안내: 소재지, 지번, 지적공부는 토지(임야)대장을 기준으로 표시되며, 등기원인 및 등기신청 접수일자는 등기부등본을 기준으로 표시됩니다.

임대차 현황

소유 일련 번호	임대차 사항							관리기관 확인		
	구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면적(㎡)	임대료(원)	임차기간	등록기관	담당자	확인일

※ '96.1.1. 「농지법」 시행 이후에 취득한 농지는 「농지법」 제23조에서 허용하는 경우에 한해 임대차가 가능합니다.

364mm×257mm[백상지 80g/㎡]

농 지 대 장

장번호: 2/2

농지취득자격증명 및 이용실태조사, 농지전용 현황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이용실태조사					농지전용				
일련 번호	신청인	취득 목적	신청 면적 (㎡)	발급일	조사기관	조사일	이용현황	경작현황	처분현황	구분	허가· 신고· 협의 기관	허가 협의·신고 일자 (기간)	전용목적 (내용)	전용면적 (㎡)

※ 농지취득자격증명 및 농지전용은 최근 3년에 대한 현황이 기록되며, 농지이용실태조사는 2021년 이후 최근 3개년 조사 및 처분 현황이 기록됩니다.

위와 같이 농지대장을 발급합니다.

수수료 : 「농지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름

년 월 일

시장·구청장·읍장·면장 직인

농지대장 정보 등록·변경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사항에 ☒ 표시를 합니다. 업무처리 절차는 뒤쪽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기관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고구분	농지의 임대차계약과 사용대차 계약	☐ 체결	☐ 변경	☐ 해제
	토지의 개량시설 설치	☐ 신규	☐ 변경	☐ 제거
	농축산물 생산시설 설치	☐ 신규	☐ 변경	☐ 제거

1. 신청인 인적사항

성명
(법인명)

주 소

주민등록번호(법인·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

2. 농지의 표시

소 재				지번	지목	면적(㎡)
일련 번호	시·군	읍·면·동	리			

3. 임대차 등록·변경

일련 번호	등록 구분	임대(법)인 사항		임차(법)인 사항			임차사항			비고 (사유)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번호	성명	주민(법인)번호	주소	면적 (㎡)	임대료 (원)	임차 기간	
	변경전 (신규)									
	변경후									

4. 토지의 개량시설 및 농축산물생산시설 등록·변경

일련번호	등록구분	소유(법)인 사항		시설사항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번호	설치시설	시설면적(㎡)
	변경전 (신규)				
	변경후				

「농지법」 제4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의2에 따라 농지대장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구청장·읍장·면장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신청인(대표자) _____ (서명 또는 인)

★ 신고 및 등록 절차

- | 신청인 | 시·구·읍·면 |
|-----------------------------------|--|
| <div>신청서 작성
(방문 또는 인터넷)</div> | <div>접 수</div> <div>서류 확인 · 검토</div> <div>현장 확인
(필요시)</div> <div>등록 · 수정</div> |
| <div>신고사항 확인</div> | |

※ 반교구분 : 아담의 몸의미의, 창조의미의

자경증명발급신청서

※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비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	-----	------	----

1. 농지의 소유자

①성명(명칭)	②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③주 소	(전화번호 :)
------	-----------

2. 소유농지의 표시 및 자경여부

④ 소 재 지			⑤지번	⑥지목	※ ⑦면적(㎡)	※ ⑧자경 여부	
시·군	읍·면	리·동				자 경	비자경

「농지법」 제5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제1항에 따라 신청하니 위 농지를 농지소유자가 자경하고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시장·구청장·읍장·면장 귀하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수수료 : 「농지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름

년 월 일

시장·구청장·읍장·면장 직인

작성방법 : 신청인은 ⑥번란까지만 기재하고 ※표시란은 증명관청에서 기재합니다.

(※자경 여부란은 해당란에 ○표를 하고 그 위에 셀로판테이프를 접착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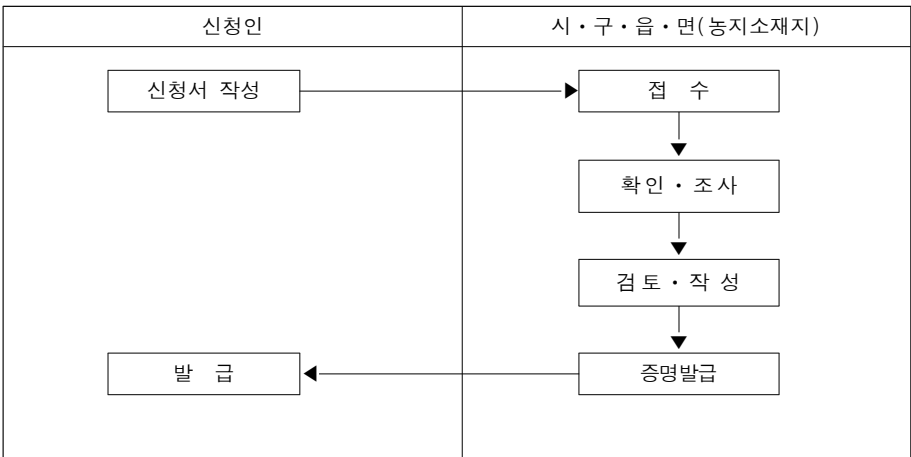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자경증명발급 운영 흐름도

★ 자경증명발급 운영흐름도.

- 1.민원인이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을 방문 또는 온라인(정부24)으로 신청
- 2.처리기관은 농업인의 농업경영상황을 조사하여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처리/발급



(앞 쪽)

No:

농지조사공무원증

사 진

3cm × 4cm

(신청 전 6개월 이내
에 모자 등을 쓰지 않
고 뒤 그림 없이 촬영
한 상반신 정면사진)

성 명

소속기관명

60mm × 90mm [보존용지(1종) 120g/m²]]

(뒤 쪽)

농지조사공무원증

소 속:

직위/직명:

생년월일:

위 사람은 「농지법」 제54조제5항
에 따른 농지조사 공무원임을 증명합
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장 직인

<주 의 사 항>

1. 조사공무원이 해당 조사검사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항상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자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2.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이 증표는 타인
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지 못합니다.

3. 이 증표의 기재사항 중 변경이 생긴 때에
는 지체 없이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여
야 합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등) ①영 제7조제1항에서 “ <u>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류</u> ”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제7조(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등) ①----- “ <u>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류</u> ”란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신설>	4. <u>별지 제4호의2서식의 주말·체험영농계획서(법 제6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u>
<신설>	5. <u>별지 제4호의3서식의 농지원상복구계획서(영 제7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u>
4.·5. (생략)	6.·7. (현행 제4호 및 제5호와 같음)
<신설>	② <u>법 제8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u>
	1. <u>신청인이 농업인인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u>
	가. <u>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으로</u>

부터 발급받은 농업인확인서

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5항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부터 발급받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증명서

2. 신청인이 농업법인인 경우 :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정관

나. 최근 5개 사업연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제11항에 따른 표준손익계산서

다. 임원 명부(신청인이 농업회사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라.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신청인이 농업회사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3. 신청인이 농업인이 아닌 개인인 경우 : 재직증명서, 재학

<신 설>

증명서 등 직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신청인이 1필지의 농지를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여러 사람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서 및 도면자료

5.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 :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라 발급된 외국인등록증

6. 신청인이 외국국적동포인 경우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발급된 국내거소신고증

③ 법 제8조제3항에서 “농지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2.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

	법인
	3. 취득대상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연접한 시·군·구 내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관할 시· 군·구 내의 농지를 최초로 취득하려는 자
	4. 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의 공유로 취득하려는 자
	5.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한 한 외국 국적동포
	6. 그 밖에 신청인의 농업경영 능력 등을 면밀히 심사할 필 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시·군 ·구의 조례로 정하는 자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 시 시·군·읍·면장은 「전자정 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 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 지(임야)대장, 주민등록표등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	④----- ----- ----- ----- ----- ----- ----- 해당한다), 토지

인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외국 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 신고사실증명을 ---. 다만, 신 청인이 주민등록표등본, 사업자 등록증,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 명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 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의 확인 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영 제7조제3항에 따라 농지취 득자격을 확인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 통신매체를 통한 교육으로 학력 을 인정받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또는 야간수업을 받는 학 생 등 통상적인 농업경영 관행 에 따라 농업경영을 할 수 있다 고 인정되는 학생,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학생 또는 법 제6조 제2항제3호의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려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제외한 「초·중등교육법」 및	⑤----- ----- ----- ----- ----- <후단 삭제>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농지취득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생 략)
2. 취득대상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기 위한 노동력 및 농업기계·장비 등의 확보여부 또는 확보방안
3. 소유농지의 이용실태(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의 경우에 한정한다)
4. 경작하려는 농작물 또는 재배하고자 다년생식물의 종류

5. (생 략)

6. 신청자의 연령·직업 또는 거주지 등 영농여건

7. 신청자의 영농의지

<신 설>

1. (현행과 같음)
2. ----- 농
----- 업기계·장비·시설 -----

3. -----
----- 한정한다) 및 입차 농지현황
4. ----- 하는 다년생식물의
----- 종류, 영농 착수시기, 수확시
----- 기, 작업일정 등이 포함된 영
----- 농 계획
5. (현행과 같음)
6. 신청인의 연령·직업·영농
경력·영농거리 등 영농여건
(세대원의 노동력을 활용하고
있거나 활용하려는 경우 세대
원도 포함한다)
7. 신청인-----
8. 최근 3년간 농지취득자격증
명 발급 이력(해당 농지를 소
유한 경우 그 농지의 소유기
간을 포함한다)

<신 설>

<신 설>

④ (생 략)

제8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통지) ① (생 략)
②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소불명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처분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내용을 시청·군청 또는 구청의 게시판에 14일 이상 공고함으로써 처분통지에 대신할 수 있다.

<신 설>

9. 농지 취득자금 조달계획

10. 신청인이 법 제10조제1항, 법 제11조제1항, 법 제42조제1항 및 법 제63조제1항을 위반하여 받은 행정처분의 내용 및 이행여부

⑥ (현행 제4항과 같음)

제8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통지) ① (현행과 같음)
②-----

----- 게시판 및 인터
넷 홈페이지-----
-----.

제22조(실태조사의 범위) 법 제31조의3제1항에서 “그 밖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34조·제35조·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협의 또는 농지전용신고 현황
2. 농지 실거래가격 및 거래량

제3절 <u>농지원부</u> <신 설>	3. 그 밖에 <u>농림축산식품부장관</u> <u>이 정하는 사항</u>
<신 설>	제3절 <u>농지위원회</u> 제54조(농지위원회 설치 최소면적 기준) 법 제44조에서 “<u>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면적</u>”이란 650헥타르를 말한다. 제54조의2(농지위원회의 기능) 법 제46조에서 “그 밖에 <u>농지 관리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u>”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u>농지 정책에 대한 교육 및 홍보</u> 2. 그 밖에 <u>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u>
<신 설> 제55조(농지원부의 <u>작성·비치</u>) 영 제70조제1항에 따른 농업인·농업법인 또는 준농업법인에 대한 별지 제58호서식의 <u>농지원부</u>는 농업인의 주소지(법인의 경우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작성하되, 해당 시(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정	제4절 <u>농지대장</u> 제55조(농지대장의 <u>작성·비치</u>) - ----- ----- ----- <u>농지대</u> <u>장은</u> ----- ----- ----- ----- ----- -----

다)·구(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정한다)·읍 또는 면(이하 “시·구·읍·면”이라 한다)의 관할구역 밖에 있는 농지를 포함하여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 ----- ----- -----
제56조(농지원부 등의 관리) ①시·구·읍·면장은 <u>농지원부</u>에 기재할 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②농지원부(법 제49조제4항에 따른 <u>농지원부 파일</u>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관리자는 법에 따른 비치 또는 이용 외의 목적으로 <u>농지원부</u>를 사용하거나 이를 이용한 전산처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농지원부의 <u>작성·관리</u>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 또는 그 밖의 자로서 직무상 <u>농지원부 기재사항</u>을 알게 된 자는 다른 사람에게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시·구·읍·면장은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던 농업인의 거주지 이동으로 「주민등록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u>신거주지</u>	제56조(농지대장 등의 관리) ①-- ----- <u>농지대장</u>----- ----- ----- ②<u>농지대장</u>(법 제49조제5항--- <u>농지대장 파일</u>----- ----- ----- <u>농지대장을</u> ----- ----- -----
③농지원부의 <u>작성·관리</u>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 또는 그 밖의 자로서 직무상 <u>농지원부 기재사항</u>을 알게 된 자는 다른 사람에게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u>농지대장의</u> ----- ----- ----- <u>농지대</u> <u>장기재사항</u>----- ----- -----
④시·구·읍·면장은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던 농업인의 거주지 이동으로 「주민등록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u>신거주지</u>	④----- ----- ----- ----- -----

의 시·구·읍·면장에게 주민 등록표를 이송하는 경우에는 농지지원부를 첨부하여 이송하여야 한다.

⑤시·구·읍·면장은 농지원부가 작성된 농업인·농업법인 또는 준농업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된 경우에는 그 농지원부를, 제4항에 따라 농지원부를 이송한 경우에는 그 농지원부의 사본을 각각 따로 편철하여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라 관리하는 농지원부 파일은 이를 농지원부 또는 농지원부의 사본으로 본다.

1. 2. (생략)

제57조(농지원부파일의 정리·보관 등) ①농지원부 파일은 멸실 또는 손상에 대비하여 그 입력된 자료와 프로그램을 다른 기억매체에 따로 입력시켜 격리된 장소에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②농지원부 파일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의

농지대장을 -----
----- 농지대장을 -----
-----.

⑤----- 농지대장이 -----

----- 농지대장을, ----- 농지대장을 이송한 ----- 농지대장의 -----
-----.

----- 농지대장 -----
농지대장 -----
-----.

1. 2. (현행과 같음)

제57조(농지대장파일의 정리·보관 등) ①농지대장 -----

-----.

②농지대장 파일을 -----

이상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농지원부 파일의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멸실되거나 손상된 농지원부 파일은 멸실·손상전의 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③농지원부 파일의 입력·출력·편집·검색 그 밖에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른 농지원부 파일의 처리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제58조(농지원부의 열람 또는 등본교부신청) ①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농지원부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교부받으려는 자는 구술 또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시·구·읍·면장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농지원부의 열람은 해당 시·구·읍·면의 사무소 안에서 관계공무원의 참여 하에 하여야 한다.

③시·구·읍·면장은 제1항에 따라 농지원부등본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지 제59호서식의 농지원부등본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 농지대장 파일의 -----
----- 농지대장 파일은 -----
-----.

③농지대장 파일의 입력·출력·편집·검색 그 밖에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른 농지대장 파일의 처리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제58조(농지대장의 열람 또는 등본교부신청) ①-----
----- 농지대장을 -----

-----.

②농지대장-----

-----.

③-----
----- 농지대장등본을 -----

----- 농지대장등본발급대장-----
-----.

<신 설>

제58조의2(농지대장의 변경신청 등) ① 법 제49조의2에 따라 변경사항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8호의2서식에 따른 농지대장 정보 등록·변경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농지의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이 체결·변경 또는 해제되는 경우 : 농지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서

2.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토지의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다음 각 목에 따른 서류

가. 고정식 온실, 벼짓재배사, 축사, 곤충사육사, 농막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등본 또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에 따른 신고필증

제59조(자경증명의 발급) ① (생략)

②시·구·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청인의 농업경영상황을 조사한 후 자경하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4일 이내에 자경증명을 발급하고 이를 별지 제61호서식의 자경증명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60조(농지전용허가대장 등의 전

나. 가목 외 토지의 개량시설 : 시설의 설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진, 도면자료 등

② 제1항 각 호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자료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시·구·읍·면장은 제1항에 따라 변경신청을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법 제23조 등 이 법이나 관계 법령에 적합하면 변경사항을 농지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59조(자경증명의 발급) ① (현행과 같음)

②-----

----- 7일 -----

-----.

제60조(농지전용허가대장 등의 전

산처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장의 작성 및 관리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대장 파일(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에 따라 기록·보관하는 대장을 말한다)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장으로 본다.

1. ~ 8. (생략)

9. 별지 제59호서식의 농지원부등본발급대장

10. (생략)

제63조(증표) <신설>

산처리) -----

-----.

1. ~ 8. (현행과 같음)

9. ----- 농지대장등본발급대장

10. (현행과 같음)

제63조(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
사) ① 법 제54조제2항에서 “일
정기간 내에 법 제8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농
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
하는 농지”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
한다. 다만, 법 제23조제1항제6
호 또는 같은 항 제7호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입
대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1.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농림축
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법 제8조에 따른 농지취
득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

<신설>

2.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연결한 시·군·구 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취득한 농지
3. 1필지의 농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공유로 취득한 농지
4.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농지
6.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한 외국국적동포가 소유한 농지
7. 그 밖에 농지의 소유·거래·이용 또는 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농지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64호서식에 의한다. 제64조(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 영 제75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54조제3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다. ③ 법 제54조제5항----- -----. 제64조(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 영 제76조----- -----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연 락 처	(044) 201 - 1735